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15 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정청래·김승원·이상직

송재호・오영환・남인순

박성준 • 윤미향 • 이성만

전혜숙 · 김남국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10대 인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4.9명이며, 학생 자살률은 2015년을 기젂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.

교육부에서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센터가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임.

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관리, 전문가 육성 등과 함께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개선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, 이 개입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·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·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·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6조의2 신 설).

법률 제 호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)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,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
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- 3. 자살시도자 및 학생정신건강센터 상담자 사후관리
- 4. 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
- 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- 6.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
- 7.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16조의2(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)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시·도지사 및 시 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), 교육감 및 교 육장은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 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. 자살시도자 및 학생정신건강
	센터 상담자 사후관리 4. 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.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 7.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